

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12. 6. 29.
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의 연임에 대한 규정을 연임회수를 제한하여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2항 “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”를 “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”로 수정 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2항 “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”를 “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”로 수정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3조(자문사항)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 1.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사항 2.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사항 3.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사항	제3조(위촉 및 해촉)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(법무법인을 포함한다)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연임</u>할 수 있다.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기간내에도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촉 이전에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. 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기피(忌避)한 경우 3. 수임사건의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미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4. 시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5.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	제3조(위촉 및 해촉) ①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 -----, <u>한 차례만 연임</u> ---. ③ (개정안과 같음)

제4조(위촉기간)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. ②고문변호사가 법률 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.	6.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해촉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. 제4조(협 의) 구미시의 각 부서장이 제2조에 따른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 소송업무 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,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도 그 결과를 소송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④ (개정안과 같음) 제4조(협 의) (개정안과 같음)
--	---	--

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”를 “구미시 고문변호사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직무 등)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미시장(소속 하부 행정기관 포함, 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
2. 각종 이의신청 및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

제3조(위촉 및 해촉) ①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(법무법인을 포함한다)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기간내에도 해당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촉 이전에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기피(忌避)한 경우
3. 수임사건의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미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
4. 시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
5.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

6.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

④ 제3항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해촉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협약) 구미시의 각 부서장이 제2조에 따른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 소송 업무 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,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도 그 결과를 소송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사건실적부 비치)”를 “(자문실적부 비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조 및 제4조에 따라”로, “[별지 제1호서식]에 의한 사건실적부”를 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수당)”을 “(수당 등의 지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사항의 내용·성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. 다만,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자 문 실 적 부

의뢰 일자	회신 일자	의뢰자 (소속,성명)	의뢰 및 회신 내용	상담유형 (문서,전화,방문 등)	비고 (소송사건,이의신청, 행정심판,법령해석, 기타)